목 차

주주총회소집공고 1
주주총회 소집공고 2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4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4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4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5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6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7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7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7
III. 경영참고사항 8
1. 사업의 개요 8
가. 업계의 현황 8
나. 회사의 현황 11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13
□ 재무제표의 승인 13
□ 정관의 변경 30
□ 이사의 선임 34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39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41
□ 자본의 감소 42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44
가. 제출 개요 44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44
※ 참고사항 45

주주총회소집공고

2026년 02월 25일

회 사 명 :	(주)광주신세계
대 표 이 사 :	이 동 훈
본 점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32(광천동) (전 화) 062-360-1234 (홈페이지)www.gjshinsegae.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관리담당 (성 명)김 영 천 (전 화)062-360-1234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31기 정기)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 정관 제 17조에 의하여 제 31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시 : 2026년 3월 26일(목) 오전 9시 30분

2. 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 대남대로 465(농성동) 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

3. 보고사항
   가) 감사보고
   나) 영업보고
   다)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
   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4. 회의 목적사항
   ○ 제1호 의안 : 제31기 (2025.1.1 ~ 2025.12.31)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 2-1호 의안 : 상법 개정 등에 따른 변경
   - 제 2-2호 의안 : 보선 관련 이사의 임기 명확화
   - 제 2-3호 의안 : 분기 배당 절차 개선

   ○ 제3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 제 3-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이동훈)
   - 제 3-2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우정섭)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건리)

   ○ 제5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 결정의 건

   ○ 제6호 의안 : 자기주식 소각의 건

5.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제24기 정기 주주총회부터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6년 3월 16일 오전 9시~ 2026년 3월 25일 오후 5시
-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전자투표시스템 접속이 가능하며,
그 이후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속이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함)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서비스 이용약관 제 11조 2항)

6.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은
전자등록전환 대상 주식 등 실물증권은 제도 시행일에 효력이 상실되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시어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전환 대상 여부는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ksd.or.kr → 전자증권제도 → 제도 시행일의 전환 → 전환 대상 종목)

7.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법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 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님의 편의를 위해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한동연 (출석률: 100%)	이건리 (출석률: 100%)	이상호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1	2025.01.16	승인	2024년 임원 하반기 성과급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승인	2025년 임원 연봉조정율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2	2025.02.04	승인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승인	현금배당(배당기준일 및 배당금액) 결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승인	이사 등과 회사 간의 자기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승인	준법지원임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참석	참석	참석
3	2025.02.18	승인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승인	제3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찬성	찬성	찬성
		보고	준법 점검 결과 보고	참석	참석	참석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과 보고	참석	참석	참석
		보고	1월 경영실적 보고	참석	참석	참석

※ 2025년 3월 19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이건리 사외이사가 재선임되었습니다.
※ 2025년 3월 19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이상호 사외이사가 재선임되었습니다.
※ 2025년 3월 19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송기봉 사외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
※ 2025년 3월 19일 한동연 사외이사가 퇴임하였습니다.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송기봉 (출석률: 100%)	이건리 (출석률: 100%)	이상호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1	2025.03.19	승인	제30기 정기주주총회 결과에 따른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승인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보고	2월 경영실적 보고	참석	참석	참석
2	2025.04.23	보고	3월 경영실적 보고	참석	참석	참석
3	2025.07.17	승인	2025년 임원 상반기 성과급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승인	ESG 자원순환을 위한 비용투자활동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보고	2분기 경영 실적 보고	참석	참석	참석
4	2025.12.10	승인	2026년 안전 및 보건계획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승인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승인	제31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 결정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승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보고서 공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보고	11월 경영 실적 보고	참석	참석	참석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감사위원회	한동연(위원장), 이건리, 이상호	2025.02.04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 보고 및 평가의 건	보고
		2025.02.18	외부감사인 감사결과 보고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결과	가결
			사업연도 감사위원회 회계, 업무 감사결과	가결

※ 2025년 3월 19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이건리 사외이사가 재선임되었습니다.
※ 2025년 3월 19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이상호 사외이사가 재선임되었습니다.
※ 2025년 3월 19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송기봉 사외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
※ 2025년 3월 19일 한동연 사외이사가 퇴임하였습니다.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감사위원회	송기봉(위원장), 이건리, 이상호	2025.03.19	감사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2025.04.23	2025년 감사계획	보고
			2025년 내부회계관리 계획	보고
		2025.07.17	감사위원회 커뮤니케이션(삼일회계법인)	보고
		2025.12.10	내부 리스크 통제활동 실적 및 계획 승인의 건	가결
			내부회계관리 경과 보고의 건	보고
			외부감사인 커뮤니케이션	보고
			감사위원회 교육	보고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건리(위원장), 이상호, 이동훈	2025.02.18	사외이사 후보 추천 심의 의결의 건	가결
		2025.12.10	사외이사후보군 관리의 건	보고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ESG위원회	이상호(위원장), 이건리, 김영천	2025.02.18	ESG 경영 24년 실적 및 25년 계획 보고의 건	보고
		2025.07.17	2025년 상반기 ESG 활동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보고
			ESG 자원순환을 위한 비용투자활동 승인의 건	가결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내부거래위원회	이건리(위원장), 이상호,김영천	2025.12.10	경영수수료 재계약 심의의 건	가결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보상위원회	한동연(위원장), 이건리, 김영천	2025.01.16	2024년 임원 하반기 성과급 심의의 건	가결
			2025년 임원 연봉조정율 심의의 건	가결
		2025.02.18	2025년 이사 보수한도 심의 의결의 건	가결

※ 2025년 3월 19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이건리 사외이사가 재선임되었습니다.
※ 2025년 3월 19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송기봉 사외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
※ 2025년 3월 19일 한동연 사외이사가 퇴임하였습니다.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보상위원회	송기봉(위원장), 이건리, 김영천	2025.07.17	2025년 임원 상반기 성과급 심의의 건	가결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3	2,400,000,000	185,000,000	61,666,667	-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 3명을 포함한 총 6명의 보수한도 총액입니다.
※ 1인당 평균보수액은 보수총액을 인원수로 단순평균하여 계산함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경영수수료	(주)신세계 (계열회사)	2025.01 ~ 2025.12	142	7.7
임대수입	(주)이마트 (계열회사)	2025.01 ~ 2025.12	45	2.4
몰수수료	(주)에스에스지닷컴 (계열회사)	2025.01 ~ 2025.12	26	1.4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주)신세계 (계열회사)	경영수수료	2025.01 ~ 2025.12	142	7.7
	상품권수수료	2025.01 ~ 2025.12	31	1.7
	상품매입 등	2025.01 ~ 2025.12	21	1.1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백화점업]

(1) 산업의 특성
백화점은 대형 판매시설을 기반으로 다양한 상품과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여 유행을 선도하는 업종입니다. 식당가, 문화센터 등 다양한 서비스 시설을 포함해 문화 강좌와 이벤트를 진행하며 도시 생활의 중요한 일부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복합쇼핑몰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백화점은 주로 고객이 직접 매장을 방문하여 구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지산업적 특성이 강합니다. 입지의 상권 규모, 교통 환경, 경쟁 점포 현황, 접근성 및 주차 시설 등이 기업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영업 점포의 경우 경쟁점의 출점을 제외하면 입지 여건 변동에 따른 위험이 낮은 편입니다.
또한, 부지 확보 및 건축·인테리어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신규 출점 시 기존 점포의 견제와 판촉비 부담으로 초기 진입비용이 높습니다. 국내 백화점 시장은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한 대형 백화점이 과점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권 내의 Leading Store로의 집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백화점은 고객의 다양한니즈를 충족하며 유통업태와 차별화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백화점 업계는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 등의 대내외 리스크 확대와 엔데믹 이후 리오프닝 효과의 둔화로 인해 국내 백화점 산업의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백화점 업계는 대형화와 팝업 스토어를 통한 집객 강화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 백화점 매출현황(전년동기대비)

구 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매출액(조원)	38.0	38.3	35.3	31.4
신장율(%)	△0.7	8.6	12.3	23.2

- 자료출처 : 통계청, 「17개 시도별 대형소매점 판매액 中 백화점 경상금액」

(3) 경기변동의 특성
백화점은 내수 산업으로 국내 경기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특히 주요 품목인 의류와 잡화 등 고마진 상품이 경기 변동에 민감합니다. 고소득층을 주요 고객으로 삼는 고급화 전략을 통해 경기변동 영향을 줄이고 있으며, 겨울철 의류 판매와 세일, 사은행사 등의 계절적 요인으로 4분기 매출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4) 경쟁요소
점포망 구축과 브랜드 충성도 확보를 위해 장기간의 대규모 투자를 요하는 사업특성상 국내외 잠재기

업의 시장 진입 가능성은 낮은 수준이며, 대체품의 성격을 지닌 고급전문점이 국내에서 활성화될 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백화점 업계는 잠재적 진출기업이나 대체재에 의해 경쟁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백화점업계는 일부 상위업체들간의 경쟁으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브랜드 인지도, 구매협상력, 전국적으로 구축된 네트워크, 양질의 상권에 시장선점을 통해 확보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대형백화점들의 시장점유율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최근에 등장한 해외직구, 온라인, 아울렛 등의 유통업태의 성장에 따라 백화점업계는 업계내의 외형 경쟁만으로는 수익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급화 전략에 취약했던 지방 백화점들은 온라인, 아울렛 시장이 확대되면서 경쟁심화에 따른 매출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백화점 업계는 소비양극화 및 가치소비(본인의 가치를 높이고 본인의 심리적 만족을 위해 고가품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소비형태) 트렌드에 기반한 수요측면의 변화와, 성숙기 시장에 대비한 고객관리 강화 및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인 복합쇼핑몰 개발, 프리미엄 아울렛, 온라인 부문 투자확대 등 적극적인 체질개선 노력을 통해 해외 백화점과 달리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백화점 업계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을 절감해 나가는 동시에, 양질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싱처를 발굴하고 있으며, 명품 브랜드 입점 등 고소득층에 대한 마케팅 강화, 20~30대 신규 고객을 위한 트렌디한 MD 보강으로 매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다양한 문화 컨텐츠를 즐길수 있는 공간을 대폭 증가시켜,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닌 '쇼핑 그 이상의 경험'을 제공하는 백화점으로서 고객의 체류시간을 증대시켜 타 유통업태보다 넓은 영역에서 경쟁력을 갖고 이를통해 효과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AI기반의 개인화 추천 서비스 활성화 및 온라인 전용 플랫폼 확대를 통해 디지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5)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2001년 7월 1일부터 대형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전면 금지(제 82조 1항)
- 주차장법:
  지자체장은 신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 (제 19조 10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제 36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업 등이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영안전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자 단체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 신청 가능(제 32조)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자연,특화경관지구,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 연면적 3,000㎡이상 규모의 대규모 점포
  건축 제한 (40,42,56조)
- 유통산업 발전법: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거나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
 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제 8조)
- 대규모유통업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거래공정화, 분쟁조정, 사건처리절차, 벌칙 등을 지정

[부동산 및 여객터미널사업]

(1) 산업의 특성
부동산 및 여객터미널사업은 고액의 자본이 필요한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사업장의 위치가 매출 및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차별화를 위해 높은 비용이 소요되며, 품질보다는 가격경쟁이 주를 이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부동산업] 복합시설물의 증가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수요 덕분에 수입구조는 안정적입니다. 향후 경쟁 심화에 대비해 합리적인 임대정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객터미널사업] 여객터미널은 일상과 밀접한 공익적 사업으로, 시장진입 난이도가 높습니다. 물가와 유가 변동을 반영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적정 요금을 산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부동산업] 임대사업은 경기에 후행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금시장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아 임대 수요와 임대료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객터미널사업] 여객터미널은 대중교통으로서 경기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4) 경쟁요소
- 경쟁의 특성 & 진입장벽
[부동산] 자본력에 의존하는 완전경쟁 시장으로, 진입이 자유롭습니다.
[여객터미널업] 공익성이 강해 규제 준수와 제한된 시장진입으로 인해 진입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 경쟁요인
[부동산] 건물의 위치, 규모, 임대가격이 주요 경쟁요소입니다.
[여객터미널업] 철도 및 항공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경쟁 속에서 고객 편의성과 고부가가치 운송 서비스 플랫폼이 주요 경쟁요소로 작용합니다.

(5)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제 36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자연,특화경관지구,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 연면적 3,000㎡이상 규모의 대규모 점포
  건축 제한 (40,42,56조)
- 유통산업 발전법: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거나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
  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제 8조)
- 탄소중립기본법
  녹색경영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에 관한 규제 (제 5조)
- 여객자동차터미널규칙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사계획과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명시

나. 회사의 현황

[백화점업]

(1) 영업개황
2025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3.1% 감소한 1,707억원, 총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0.6% 감소한 5,144억원입니다. 또한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0.9% 감소한 502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 시장점유율
광주 지역에는 당사를 포함해 롯데백화점, NC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등 20여 개의 대형마트가 영업 중입니다. 당사는 상장법인으로, 실적 공시를 통해 재무 현황과 영업 실적을 매 기간마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데백화점 광주점 등 경쟁 백화점들은 비상장회사이거나 상장회사의 개별 지점으로서, 그들의 실적을 파악할 경로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점유율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광주광역시 백화점 판매액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기준일 현재 일부 수치는 통계적으로 추정된 값입니다.)

광주지역에 당사를 포함해 롯데백화점과 NC백화점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연단위로 점유율이 대체로 신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 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광주신세계	51.0%	50.3%	49.7%	46.4%
기 타(*)	49.0%	49.7%	50.3%	53.6%
합 계	100.0%	100.0%	100.0%	100.0%

- 자료출처 : 통계청 (당사 총매출액 ÷ 광주광역시 총매출액)
(*) 지역 내 백화점 및 아울렛의 매출액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3) 시장의 특성
유통업에서 중요한 요소는 입지 선점을 통한 고객 접근성 확보입니다. 당사는 광천동터미널 주변 지역 개발 및 복합개발을 통해 상권 내 유입 및 유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광주의 랜드마크 백화점으로서 입지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의 신규 출점 의지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고소득층 및 소비 성향이 높은 20~30대 고객을 겨냥하여 지역 최초 브랜드와 글로벌 브랜드를 유치하고, 최신 트렌드 기반의 팝업스토어를 구성하는 등 백화점 본연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광주지역 도·소매 유통시장은 대형 백화점(신세계, 롯데, NC)을 중심으로 아울렛 등 다른 업태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3년 이후 리오프닝에 따른 기저효과는 크게 줄어들었고, 경기 불황, 금리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해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황입니다.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고객의 가치와 소비 트렌드도 변화하고 있으며, 업종 및 업태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고객'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지속 성장의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경기 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고소득층을 확보하고, 고객 경험 관리(CXM)를 강화하여 격조 높은 매장 분위기를 연출하는 동시에 각 세대별 고객 만족도 증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고품격 백화점으로서 이미지와 지역 내 위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사는 2024년 7월 1일 금호고속으로부터 영업 양수한 유스퀘어 문화관 부지에 대한 백화점 복합화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가올 경쟁에 대비하며, 지역 내 입지를 더욱 확고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해당사항 없음

(5)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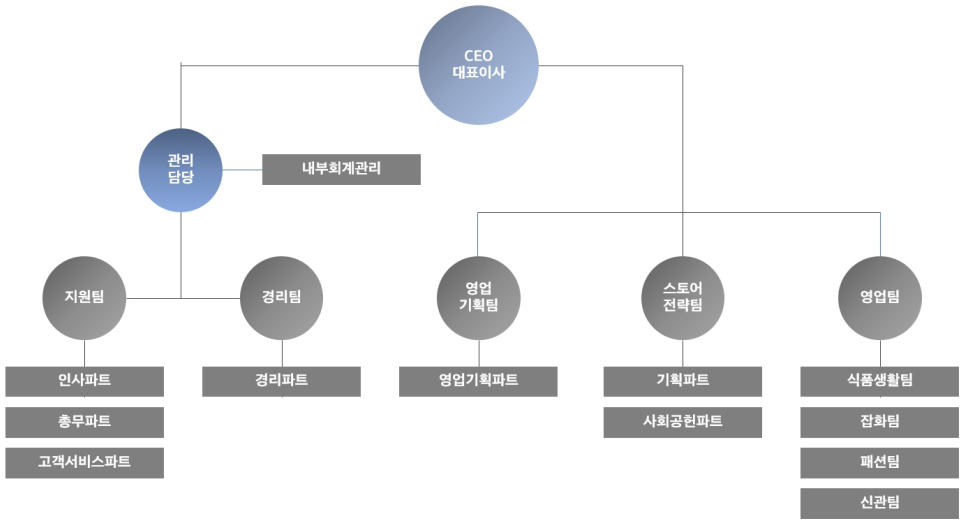

[부동산 및 여객터미널사업]

(1) 영업 개황
당사는 백화점업 외에도 부동산 임대업과 여객터미널 사업을 추가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2025년 당사는 부동산 및 여객터미널 사업 부문에서 총매출 135억원과 영업이익 23억원을 달성했습니다.

(2) 시장 점유율
당사의 부동산 임대업과 여객터미널 사업 부문은 신규 경쟁자의 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지역 내에서 대체 이동수단과의 직접적인 경쟁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객관적인 시장 점유율을 측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3) 시장의 특성
부동산 및 여객터미널 사업은 입지 의존성이 높고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신규 시장 진입이 매우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구조로, 물가 및 유가 변동 등 주요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하여 관련 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통해 적정 요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로 금호고속 주식회사로부터 영업양수한 광주종합버스터미널(유스퀘어)는 광주

도심의 교통 중심지로서, 총 84개의 상가와 더불어 서울, 경기, 충청, 강원, 경상, 호남권에 걸쳐 88개의 버스 노선을 통해 일 약 884회의 고속버스가 운행하고 있으며, 일평균 약 12,000명 이상의 고객에게 여객터미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고속버스 소화물 운송 서비스를 통해 당일 배송이 가능한 고속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광주 서구 광천동 일대에 위치한 대지면적 19,736평, 건물 연면적 26,727평의 지상 3층, 지하 2층 규모의 복합 건물로 당사의 백화점 사업장과 인접해있어, 향후 안정적인 수익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해당사항 없음

(5) 조직도
현재 금호고속 주식회사와의 터미널 운영관리 및 책임 임대차 계약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 부문에 대한 별도의 조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제31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재무제표 주석의 '1. 회사의 개요' 참고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제 31(당)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완료 전 재무제표입니다.
※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3월 16일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제 31(당) 기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제 30(전) 기 2024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단위: 원)

과 목	주석	제 31(당) 기말		제 30(전) 기말	
자 산					
Ⅰ. 유 동 자 산			103,418,638,231		83,931,914,044
현금및현금성자산	4,32	76,599,715,407		64,141,675,057	
단기금융상품	32	10,000,000,000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6,30,32	13,399,308,994		15,547,476,326	

재고자산	7	3,311,208,436		4,121,060,809	
기타유동자산	8	108,405,394		121,701,852	
Ⅱ. 비 유 동 자 산			1,159,405,539,917		1,144,152,212,074
장기금융예치금	5,32	9,000,000		9,000,000	
관계기업투자	9	521,040,333		-	
유형자산	10,35	540,846,665,657		529,468,672,212	
투자부동산	11,35	92,133,360,201		94,250,017,311	
사용권자산	12,31	212,668,410,405		225,050,473,144	
무형자산	13	7,277,011,773		1,322,014,017	
기타장기금융자산	8,31,32	299,607,746,446		289,854,913,076	
이연법인세자산	28	5,794,258,268		4,197,122,314	
순확정급여자산	18	548,046,834		-	
자 산 총 계			1,262,824,178,148		1,228,084,126,118
부 채					
Ⅰ. 유 동 부 채			257,375,818,563		140,678,266,267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4,30,31,32	79,424,581,332		72,047,858,498	
당기법인세부채	28	10,961,109,842		12,268,532,570	
단기차입금	15,32	159,908,951,836		50,000,000,000	
기타단기금융부채	17,32	148,800,000		148,800,000	
기타유동부채	17,23	6,921,126,707		6,115,077,152	
리스부채	16	11,248,846		97,998,047	
Ⅱ. 비 유 동 부 채			140,214,965,471		250,285,661,101
장기차입금	15,32	119,845,065,086		229,555,061,041	
기타장기금융부채	17,32	18,463,809,030		17,874,081,622	
기타비유동부채	17	1,898,202,265		2,580,772,106	
리스부채	16	7,889,090		104,945,770	
순확정급여부채	18	-		170,800,562	
부 채 총 계			397,590,784,034		390,963,927,368
자 본					
Ⅰ. 자 본 금	19	7,957,190,000		7,957,190,000	
Ⅱ. 기 타 자 본	20	1,678,367,295		1,676,068,202	
Ⅲ. 이 익 잉 여 금	21	855,597,836,819		827,486,940,548	
자 본 총 계			865,233,394,114		837,120,198,750
부 채 와 자 본			1,262,824,178,148		1,228,084,126,118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제 31(당) 기 2025년 1월 1일 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

제 30(전) 기 2024년 1월 1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단위: 원)

과 목	주석	제 31(당) 기말	제 30(전) 기말
Ⅰ. 매출액	16,22,30,31	184,210,548,361	183,575,423,411

Ⅱ. 매출원가	25	16,034,236,198	16,494,030,455
Ⅲ. 매출총이익		168,176,312,163	167,081,392,956
판매비와관리비	16,18,24,25,30	115,704,109,530	114,753,731,754
Ⅳ. 영업이익		52,472,202,633	52,327,661,202
기타수익	26	1,448,816,747	480,116,893
기타비용	26	3,431,805,008	3,705,046,818
금융수익	27	10,964,261,506	14,576,428,933
금융비용	16,27	4,359,512,577	2,369,851,967
지분법이익	9	518,741,240	-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57,612,704,541	61,309,308,243
법인세비용	28	13,146,188,408	15,133,614,734
Ⅵ. 당기순이익		44,466,516,133	46,175,693,509
Ⅶ. 기타포괄손익		424,158,538	(563,613,354)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8,21	559,575,908	(732,917,236)
지분법자본변동	9	2,299,093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의 법인세	21	(135,417,370)	169,303,882
Ⅷ. 총포괄이익		44,892,973,764	45,612,080,155
Ⅸ. 주당이익	29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5,830	5,962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31(당) 기 2025년 1월 1일 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 (처분예정일 2026년 3월 26일)

제 30(전) 기 2024년 1월 1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 (처분예정일 2025년 3월 19일)

(단위 : 원)

과 목	제 31(당) 기		제 30(전) 기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44,890,674,671		45,612,080,155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2.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	424,158,538		(563,613,354)	
3. 당기순이익	44,466,516,133		46,175,693,509	
Ⅱ. 이익잉여금처분액		44,890,674,671		45,612,080,155
1. 사업확정적립금	26,585,461,871		28,832,301,755	
2. 배당금 (*) (주당배당금(율): 당기 : 2,400원(240%) 전기 : 2,200원(220%))	18,305,212,800		16,779,778,400	
Ⅲ. 차기이월이익잉여금		-		-

(*) 2024년 2월 28일 이사회에서 유스퀘어 영업양수도에 대한 결의에 따라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

구권이 발생하였으며, 영업양수에 반대하는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 330,018주의 현금배당액은 제외하였습니다.

-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제 31(당) 기 2025년 1월 1일 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

제 30(전) 기 2024년 1월 1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단위: 원)

과 목	자본금	기타자본	이익잉여금	총 계
2024년 01월 01일(전기초)	7,957,190,000	11,875,274,492	799,380,678,393	819,213,142,885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46,175,693,509	46,175,693,509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563,613,354)	(563,613,354)
총포괄손익 합계	-	-	45,612,080,155	45,612,080,155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자기주식 취득	-	(10,199,206,290)	-	(10,199,206,290)
연차배당	-	-	(17,505,818,000)	(17,505,818,000)
2024년 12월 31일(전기말)	7,957,190,000	1,676,068,202	827,486,940,548	837,120,198,750
2025년 01월 01일(당기초)	7,957,190,000	1,676,068,202	827,486,940,548	837,120,198,750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44,466,516,133	44,466,516,133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424,158,538	424,158,538
지분법자본변동		2,299,093	-	2,299,093
총포괄손익 합계	-	2,299,093	44,890,674,671	44,892,973,764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연차배당	-	-	(16,779,778,400)	(16,779,778,400)
2025년 12월 31일(당기말)	7,957,190,000	1,678,367,295	855,597,836,819	865,233,394,114

-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 31(당) 기 2025년 1월 1일 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

제 30(전) 기 2024년 1월 1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단위: 원)

과 목	제 31(당) 기		제 30(전) 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7,625,651,851		76,985,459,574
(1) 당기순이익	44,466,516,133		46,175,693,509	
(2) 당기순이익 조정을 위한 가감	41,842,069,775		39,134,571,018	
퇴직급여	1,232,907,010		1,706,703,037	
지분법이익	(518,741,240)		-	
감가상각비	24,987,987,492		27,352,872,846	

무형자산상각비	685,511,608		337,333,319	
복리후생비	536,435,229		416,436,515	
지급수수료	-		804,150	
유형자산처분손실	2,926,117,086		1,936,520,850	
대손상각비환입	-		(129,146,81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이익	-		(81,028,754)	
이자비용	4,359,474,411		2,369,851,967	
법인세비용	13,146,188,408		15,133,614,734	
이자수익-기타	(1,381,403,741)		(4,883,715,293)	
유효이자율법 적용 이자수익	(9,582,833,370)		(9,611,684,886)	
임대료수익	(463,153,456)		(390,900,689)	
사용권자산처분이익	(5,909,213)		(416,030,344)	
매출채권의 증감	1,724,045,836		3,976,776,538	
기타유동채권의 증감	594,442,367		1,373,838,767	
기타유동자산의 증감	13,296,458		10,109,142	
재고자산의 증감	809,852,373		(215,896,580)	
매입채무의 증감	(31,039,335)		(146,964,714)	
기타유동채무의 증감	4,150,872,409		949,315,636	
기타유동부채의 증감	526,378,041		808,177,074	
기타비유동부채의 증감	-		442,745,952	
종업원급여채무의 증감	(476,180,100)		(104,324,600)	
순확정급여부채의 관계사전출입	(205,818,030)		183,725,980	
퇴직금의 지급	(1,182,152,458)		(669,753,350)	
사외적립자산의 증감	(4,208,010)		(1,214,809,460)	
(3) 이자의 수령	1,211,082,870		5,964,809,879	
(4) 이자의 지급	(3,707,852,467)		(2,152,516,970)	
(5) 법인세의 납부	(16,186,164,460)		(12,137,097,862)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8,447,769,385)		(438,238,728,415)
보증금의 감소	390,000,000		470,000,000	
보증금의 증가	(560,000,000)		(590,000,000)	
유형자산의 처분	-		72,150,000	
유형자산의 취득	(27,843,200,326)		(455,988,848,004)	
투자부동산의 취득	-		(57,190,398,112)	
무형자산의 취득	(434,569,059)		(10,828,149)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10,000,000,000)		-	
단기금융상품의 회수	-		70,000,0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회수	-		4,999,195,850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6,719,842,116)		255,764,330,666
단기차입금의 차입	-		50,000,000,000	
사채의 발행	-		230,000,000,000	
리스부채의 감소	(60,063,716)		(940,451,760)	
예수보증금의 증감	120,000,000		4,409,806,716	
자기주식의 취득	-		(10,199,206,290)	
배당금 지급	(16,779,778,400)		(17,505,818,000)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I+ II+ III)		12,458,040,350		(105,488,938,175)
V.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64,141,675,057		169,630,613,232

VI.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76,599,715,407		64,141,675,057

주석

제 31 (당) 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 30 (전) 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1. 당사의 개요

주식회사 광주신세계("당사"라 함)는 1995년 4월 10일자로 설립되어, 백화점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32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설립 당시 당사의 자본금은 5억원이며, 수 차례의 증자를 거쳐 당기말 현재 당사의 자본금은 약 80억원입니다.

당사는 2002년 2월 7일자로 주식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였으며, 당기말 현재 주요 주주는 주식회사 신세계(지분율 62.84%)입니다.

당사는 2006년 3월 3일자로 상호를 주식회사 광주신세계백화점에서 주식회사 광주신세계로 변경하였으며, 2006년 7월 4일자로 광주신세계 이마트의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마트영업부문을 (주)이마트에 양도하였습니다.

당사는 2024년 7월 1일자로 금호고속 주식회사로부터 광주 유스퀘어 터미널 사업을 영업양수 하였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1.1 당사가 채택한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사는 2025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

통화의 교환가능성을 평가하고 다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지 않다면 현물환율을 추정하며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1.2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실무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응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 년 1 월 1 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함.
-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
- FVOCI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은 2026 년 1 월 1 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공시':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원가법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

전력 생산의 원천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 조건(예: 날씨)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업이 기초 전력량의 변동성에 노출되는 계약으로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을 정의하고,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을 매입 또는 매도하는 계약'이 자가 사용 예외의 평가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에 의존하는 '예상 전력거래의 '변동 가능 명목수량'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위험회피회계 요건을 변경하고, 관련 공시를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 년 1 월 1 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합니다. 제1118호가 도입한 새로운 표시 요구사항은 특히 영업손익의 정의와 관련하여 유사 기업 간 재무성과의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또한,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의 공시 요구사항은 투명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기준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기준서의 소급작성 요구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비교정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에 따라 재작성됩니다.

당사는 제1118호를 아직 채택하지 않았으며, 기준서 적용이 연결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중입니다. 연결회사는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 3월 31일 종료되는 기간의 제1118호에 따른 첫 중간재무제표 및 2027년 12월 31일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 보고를 예정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현재 새로운 기준서의 적용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에 있으며, 기준서의 채택이 당사의 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포괄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을 새로운 범주로 분류하게 되어 영업손익의 계산 및 보고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2.2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당사가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며, 관계기업 투자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이후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당사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당사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됩니다. 관계기업의 손실 중 당사의 지분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포함)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을 중지합니다. 단, 당사의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당사에 법적-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식합니다. 또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당사는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할 때,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당사가 적용하는 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이 적용되었는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조정합니다.

2.3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

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는 포괄손익계산서에 금융원가로 표시되며, 다른 외환차이는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에 표시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4 금융자산

(1) 분류

당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당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당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당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당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당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당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

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5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대가의 금액으로,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합니다. 매출채권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

2.6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소매재고법, 저장품은 이동평균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7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추정 내용연수
건물	25~30년
구축물	20년
인테리어	5년
공구와비품	5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8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되며, 적

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9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2.10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인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경제적효익 등을 포함한 자산 인식요건이 충족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계입니다. 계약적 고객관계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으로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무형자산은 5년~10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11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사용권 자산을 포함)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25년~30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12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3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당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은 부채입니다. 해당 채무는 무담보이며, 인식 후에 통상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것이아니라면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로 표시합니다. 해당 채무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2.14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당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

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차입금' 등으로 표시됩니다.

차입금은 공정가치에서 발생한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최초 인식하고 이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받은 대가(거래원가 차감 후)와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한도를 제공받기 위해 지급한 수수료는 차입한도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은(probable) 범위까지는 차입금의 거래원가로 인식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차입을 실행할 때까지 이연합니다. 차입한도약정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없는 범위의 관련 수수료는 유동성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선급금으로서 자산으로 인식 후 관련된 차입한도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차입금은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당사가 보고기간말 또는 보고기간말 이전에 약정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받는다면, 이러한 약정사항은 부채의 유동 비유동 분류에 고려합니다. 보고기간 후에만 약정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받는다면, 이러한 약정사항은 기말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5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판매보증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및 소송충당부채 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6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측정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당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세무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 고려합니다. 당사는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당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당사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17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당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당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사는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주로 10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2.18 수익인식

수익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정한 대가에 기초하여 측정되며 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수행의무에 거래가격 배분 → ⑤ 수행의무 충족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은 제외합니다.또한 당사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1) 재화 및 용역의 제공

당사는 백화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을 통해 상품판매로 인한 수익은 고객에게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으며, 변동대가에 대해서는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1115호에 따라 본인을 대신해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특정매장의 상품매출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상품 인도시점에 판매대가에서 특정매입원가를 차감한 순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상품을 구매한 후 일정기간 이내에 반품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반품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에 대하여 환불부채(기타유동부채)를 인식하였습니다. 당사는 판매시점에 누적된 경험에 기초하여 기댓값 방법으로 반품을 예측합니다.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 이러한 가정과 예상되는 반품금액이 타당한지 재평가합니다.

2) 위탁관리 등 용역의 제공

당사는 고객에게 위탁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터미널운영용역, 임대관리용역, 상품권위탁판매 등과 같은 수행의무를 식별합니다. 당사는 발생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고객충성제도
당사는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고객에게 매출거래의 일부로 보상점수를 부여하고, 고객은 부여 받은 보상점수를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무상 또는 할인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점수는 고객이 해당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할인 혜택(즉 중요한 권리)을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따라서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하는 약속은 별도의 수행의무입니다.

거래가격은 재화나 용역 및 보상점수의 상대적 개별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배분합니 다. 보상점수당 개별판매가격은 당사의 과거 경험에 따라 고객이 보상점수를 사용할 때 제공되는 할인과 사용가능성에 기초하여 추정합니다. 최초 판매거래 시점에 보상점수와 관련된 수익은 계약부채로 인식합니다. 보상점수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고객이 보상점수를 사용할 때 인식합니다.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점수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고객이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에 비례하여 인식합니다.

2.19 리스

(1) 리스제공자

당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

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2) 리스이용자

당사는 다양한 매장, 사택, 사무실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2~20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아래 (3)에서 설명하는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리스이용자인 부동산 리스의 경우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당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당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당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리스기간이 당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그 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지급할 리스료 또한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당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가능하다면 개별 리스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국가, 통화, 담보, 보증과 같은 리스에 특정한 조정을 반영

개별 리스이용자가 리스와 비슷한 지급일정을 가진 분할상환 차입금 이자율을 쉽게 관측(최근의 금융 또는 시장 자료를 통해)할 수 있는 경우, 당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할 때 그 이자율을 시작점으로 사용합니다.

당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리스기간이 변경되거나, 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한 평가의 변경을 발생시키는 상황의 변경이나 유의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스료를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경이나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어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스료를 변경되지 않은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다만 변동이자율의 변동으로 리스료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자율 변동을 반영하는 수정 할인율을 사용합니다.

리스계약이 변경되고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변경된 리스의 리스기간에 기초하여, 수정된 리스료를 리스변경 유효일 현재의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당사는 유형자산으로 표시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하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사용권자산인 건물에 대해서도 재평가모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매수선택권 없이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와 소액의 사무실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당사 전체에 걸쳐 다수의 매장, 사택, 사무실 등의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

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 리스제공자가 아니라 당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리스기간의 결정과 관련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에 대한 정보는 주석 3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2.20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주석 34 참조).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당사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경영이사회를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21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2.22 현금및현금성자산

재무상태표에 현금과 은행잔고는 현금(즉 보유 현금과 요구불예금)과 현금성자산으로 구성됩니다. 현금성자산은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일반적으로 만기가 3개월 이내)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입니다. 현금성자산은 투자나 다른 목적이 아닌 단기의 현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합니다.

제3자와의 계약상 당사의 사용이 제한된 은행잔고는 그러한 제한이 은행잔고를 더 이상 현금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현금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은행잔고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상 제약은 주석 5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현금의 사용에 대한 계약상 제약이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을 초과한다면, 관련된 금액은 재무상태표상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현금흐름표의 목적상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위에서 정의한 현금및현금성자산과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하고 당사의 현금관리의 일부를 구성하는 당좌차월의 순액으로 구성됩니다. 그러한 당좌차월은 재무상태표상 단기차입금으로 표시됩니다.

2.24 재무제표 승인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6년 2월 11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됐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상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정관의 변경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1) 제2-1호 : 상법 개정 등에 따른 변경

2) 제2-2호 : 보선 관련 임기 명확화
3) 제2-3호 : 분기 배당 절차 개선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 당사는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별도 정관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제 2-1호 :상법 개정 등에 따른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28 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 28 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독립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 36조의 2 (위원회) ①본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감사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 제33조, 제34조 및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36조의 2 (이사회 내 위원회)** ① <좌 동> 1. 감사위원회 2.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 ③ <좌 동>	- 사외이사 명칭 변경
제 38 조의 2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본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정관 제3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관계법령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 38 조의 2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② <좌 동> ③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독립이사이어야 하고, 독립이사 아닌 위원은 관계 법령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 <좌 동>	- 사외이사 명칭 변경 - 감사위원 분리 선임 인원 상향 (1명→ 2명)

⑤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다만, 상법 제368조의 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한다. ⑥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 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⑦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 이어야 하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⑥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 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 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⑦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독립이사 이어야 하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감사위원의 선・해임시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반영 - 사외이사 명칭 변경
제 38 조의 5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①본 회사는 정관 제3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둔다. ②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한다. ③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제 38 조의 5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①본 회사는 정관 제3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독립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둔다. ②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한다. ③위원의 과반수는 독립이사로 한다.	- 사외이사 명칭 변경
제 38 조의 6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직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총회에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한다.	**제 38 조의 6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직무)**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총회에 독립이사후보를 추천한다.	
제 40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①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 서정하는 서류 ②본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서류를 받은날로부터 4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0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①~② <좌 동> ③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상장회사 감사 보고서 제출기한 특례 적용

부 칙 제 1조 이 정관은 정기주총에서 승인한 날(2019년 3월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의2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제 28조에서 규정하는 이사의 임기는 2017년 신규 선임 이사부터 적용토록 한다. 단, 2016년 말 재임중이었던 사외이사가 2016년 이후 재선임되는 경우에는 변경 후 규정에 따라 그 임기를 2년으로 한다.	**부 칙** 제 1조 <수정> 이 정관은 정기주총에서 승인한 날(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수정> 제28조, 제38조의2(④은 부칙 제1조 적용),제38조의5 및 제38조의6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 3조 <신설> 제36조의2 제1항 제2호의 위원회 명칭 변경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상법 시행 시기('26.7.23자)를 고려하여 별도 부칙 마련
제18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을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본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 지점 명의 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 할 수 있다.	**제18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본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 지점 명의 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 할 수 있다.	- 오타 수정
제27조 (이사의 선임) ②이사선임은 관계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회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7조 (이사의 선임)** ②이사선임은 관계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38 조의 3(감사위원회의 직무) ①감사위원회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제 38 조의 3(감사위원회의 직무)** ①감사위원회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 감사위원회 명칭 명확화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⑦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⑦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 2-2호 : 보선 관련 이사의 임기 명확화]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29 조 (이사의 보선) ①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29 조 (이사의 보선)** ① <좌 동> ② < 삭 제 >	- 이사의 임기 명확화를 통한 책임경영 및 주주충실의무 강화

[제 2-3호 : 분기 배당 절차 개선]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42 조2 (분기배당) ① 본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결의는 제1항의 각 기준일 이후 45일내에 하여야 한다.	**제 42 조의2 (분기배당)** ① 본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②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써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 배당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배당 기준일 변경

□ 이사의 선임

제3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
1) 제3-1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이동훈)
2) 제3-2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우정섭)

제4호 의안: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건리)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동훈	1968.11.29	사내이사	해당없음	임원	이사회
우정섭	1972.05.10	사내이사	해당없음	임원	이사회
이건리	1963.06.11	사외이사	분리선출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3)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동훈	(주)광주신세계 대표이사	2020년 ~ 현재	(주)광주신세계 대표이사	없음
		2017년 ~ 2019년	(주)신세계 타임스퀘어점 점장	
		2015년 ~ 2017년	(주)신세계 의정부점 점장	
우정섭	(주)신세계 지원본부장	2025년 ~ 현재	(주)신세계 지원본부장	없음
		2023년 ~ 2025년	(주)신세계 부문 재무관리본부장	
		2021년 ~ 2023년	(주)신세계 전략실 재무본부장	
		2017년 ~ 2021년	(주)신세계 전략실 재무팀장	
이건리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2021년~ 현재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없음
		2018년 ~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2012년 ~ 2013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2011년	창원지검장	
		2010년	제주지검장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이동훈	없음	없음	없음
우정섭	없음	없음	없음
이건리	없음	없음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이건리 사외이사 후보자]

사외이사 후보 이건리는 ㈜광주신세계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경우,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에 관한 이사로서의 주의 의무를 준수하고, 주주 및 임직원 등 회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 넓게 청취하여 항상 회사 전체의 보편적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연세대학교 법학 석사 취득, 한양대 법학 박사과정을 이수하였으며, 제주지검장, 창원지검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직 등을 역임하고, 현재 법무법인 동인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후보자는 오랜 검사 및 변호사 경력을 바탕으로 한 법률 전문가이고,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직을 거치면서 국정 운영 및 정책 기획에 있어서도 풍

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본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의 가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대주주 및 대주주 관련 회사들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적법하고 윤리적이며 원칙을 준수하는 경영활동을 수행하겠습니다. 회사의 기업가치 증진과 회사의 발전을 회사경영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주주 뿐만 아니라 제반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자, 종업원, 고객, 협력회사, 지역사회 등 회사의 주요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윤리성
본 후보자는 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회사의 사업 기회, 자산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회사와 경쟁적인 사업을 하거나 기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사의 기밀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 하겠습니다.

4)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광주신세계의 '고객의 불만에서 기회를 찾고 관습을 타파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혁신기업'이라는 경영이념에 따라 고객의 생활에 가치를 향상시키는 유통서비스 기업으로서 가치를 실현하고 회사의 영속과 기업 성장을 위한 주주 가치 제고뿐만 아니라, 동반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의 가치와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광주신세계가 강조하고 있는 '윤리경영'을 최고 가치로 하여 모든 업무 활동을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며, 나아가 기업의 성장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문화를 숙지하고 준수하겠습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이동훈 사내이사 후보자]

이동훈 사내이사 후보자는 의정부점 점장과 타임스퀘어점 점장을 역임하였고, 2020년 3월부로 광주신세계 대표이사로서 재직중이며 ㈜광주신세계를 한단계 더 성장시키고 이끈 강력한 리더십과 실적으로 입증된 결단력, 실행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당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우정섭 사내이사 후보자]

㈜신세계 재무담당, 신세계사이먼 지원 담당, 신세계 전략실 재무팀장 및 재무본부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신세계 지원본부장으로 재직 중인 재무·관리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재무 및 관리 분야에서 백화점과 아울렛을 포함한 유통사업 전반을 두루 경험하였으며, 전사 차원의 의사결정 체계와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장기경영전략 수립, 리스크 관리, 수익성 중심 경영 강화를 통해 회사의 재무 안정성 확보와경영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바탕으로 향후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적임자로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이건리 사외이사 후보자]

이건리 사외이사 후보자는 2023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광주신세계의 사외이사로 재임하며 국내 기업들의 주요 관심사인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한 법률전문가로서 회사의 리스크 관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언하는 등 그 역량을 증명 하였습니다. 임기 동안 검증된 역량과 경험, 그리고 책임감을 바탕으로 주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권익과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외이사 적임자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확인서

확 인 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2026년 2월 25일

보고자 : 이 동 훈 (서명 또는 날인)

확 인 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2026년 2 월 25 일

보고자 : 우 정 섭 (서명 또는 날인)

확 인 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2026년 2월 25일

이 건 리

보고자 : 이 건 리 (서명 또는 날인)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4호 의안: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건리)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건리	1963.06.11	사외이사	분리선출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1)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건리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2021년~ 현재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없음
		2018년 ~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2012년 ~ 2013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2011년	창원지검장	
		2010년	제주지검장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이건리	없음	없음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이건리 후보자]

이건리 후보는 국내 기업들의 주요 관심사인 중대재해처벌법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 리스크 관리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역임하여 국정운영 및 정책기획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법률 · 공공부문의 전문가입니다. 이에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시각으로 회사경영을 감독하는 분리선출 감사위원으로 추천합니다.

확인서

확 인 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2026년 2월 25일

이 건 리

보고자 : 이 건 리 (서명 또는 날인)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5호 의안: 이사보수 한도 결정의 건

가. 이사의 수・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6 (3)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30억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6 (3)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11.3억원
최고한도액	24억원

□ 자본의 감소

제6호 의안: 자기주식 소각의 건

가. 자본의 감소를 하는 사유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자기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상법 제341조의2에 의한 특정 목적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에 근거하여 자본금 감소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소각이 가능합니다.

나. 자본감소의 방법
- 소각 방법 : 자본금 감소(회사 보유 자기주식 임의/무상소각)
- 액면 가액 : 1,000원
- 소각 대상 : 2024년 7월 1일을 영업양수기일로 하여 금호고속 주식회사에 광주 유스퀘어 터미널 사업을 영업양수시 양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

[자기주식소각 진행일정]

구분	일정	비고
주주총회 일정	2026년 3월 26일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2026년 3월 27일 ~ 2026년 4월 27일	-
효력발생일	2026년 4월 28일	-
변경상장예정일	2026년 5월 12일	-

다. 자본감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감소비율 및 기준일

감자주식의 종류	감자주식수	감자비율	감자기준일	감자전자본금 (발행주식수)	감자후자본금 (발행주식수)
기명식 보통주	330,018	4.15%	2026.04.28	7,957,190,000 (7,957,190)	7,627,172,000 (7,627,172)

※ 기타 참고사항
당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보통주 330,018주 전부에 대하여 임의/무상 소각할 예정임에 따라, 일반주주의 소유주식 수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 절차가 없습니다.

상기 내용 및 일정은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과정 및 주주총회 결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의 결정(일정포함) 및 자본 감소와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수행에 관하여는 대표이사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6년 03월 16일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2026.03.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 예정입니다.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2026년 3월 16일 금감원 공시 및 회사 홈페이지 게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 참고사항

▶ 전자투표에 관한 안내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제24기 정기 주주총회부터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6년 3월 16일 오전 9시~ 2026년 3월 25일 오후5시
-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전자투표시스템 접속이 가능하며,
그 이후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속이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함)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주총 집중일 주총 개최 사유

- 당사는 주주들의 원활한 참석을 위해 주주종회 자율분산 프로그램에 참여,
2026년 3월 26일 09시 30분 주주총회 개최를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총 집중일 개최 사유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